

期債의 取扱을 “農協”으로부터 引受하여 農業振興公社가 取扱한다. (金庫設置)

8. 農林部 對 農業振興公社의 行政節次(特히 事業施行에 關한)를大幅 簡素化한다.

—示方에 依한 事業執行—

9. 組合과 組合職員을 為한 共濟事業實施

IV. 法改正의 利點

1. 時間, 人力, 經費節減

2. 業務(事業)處理迅速化.

強力한 事業推進을 期할 수 있음.

3. 國庫節約

4. 不健全組合의 更生

5. 任職員의 身分保障(組合)

6. 行政體系의 一元化로 業務簡素化

7. 協同體의 構成으로 相互利益增進

8. 綜合的인 開發을 期하므로써 事業의 經濟性을 높임

V. 問題點

1. 市, 道知事, 財務部, 農協이 反對할 것임.

2. 農業振興公社의 機構改編과 性格의 變化.

VI. 結論

以上과 같이 農村近代化促進法을 改正하여 農地改良組合(農業振興組合)을 農業振興公社傘下組織體로 吸收하여 全天候農業用水開發의 完成, 科學的營農技術指導事業, 耕地整理事業, 農業의 機械化, 農家住宅改良事業等等을 推進하여 生產과 建設을 表裏一體화시켜, 非生產의 非能率의 在來의 思考方式을 拂拭하고 生產의 能率의 前進하는 方向으로 體系 機構를 整備하고 合理的인 運營을 하므로써

大統領閣下께서 畫脊로 軫念하시는 우리나라 農村의近代化農民의 所得增大의 꿈이 이루어져서 踏進하는富強한 偉大한 農村이 이루어짐에 따라 諸分野에 걸쳐都市와 農村의 隔差가縮小되고 살기 좋은 農村이 建設될 것이다.

政府는 此際에 勇斷을 내려 即興의 아닌 恒久의 農業近代化作業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懇切히 바라는 바랍니다.

農業機械化의 方向

—施策面—

이 철 주*

농업 근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은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이룩하는데는 농업의 기계화 외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 중노동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으로서 이를 편한 한 작업으로 바꾸는 방법도 기계화가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며 급속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농업의 기계화는 최단시 일 내에 강력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기계화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자연적인 조건으로 평야지가 협소하고 임야지가 7 활을 겸하고 있는 점과 강우량이 작업시기인 하절에 집중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인위적인 것으로는 농민의 빈곤

및 영세성, 담작 위주와 기계 기술의 습득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과 특히 농민 스스로나 위정자가 농업의 기계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뿐더러 깊이 박힌 사고방식이 무엇보다도 기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의 타개방법으로는 경지정리 및 농지의 교환 분합과 관개배수등 토지기반 조성과 기계화를 위한 작부 체계 확립 및 경종 기술의 개량 그리고 기계의 공동 이용조직이나 협업화 농장의 육성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기계화 정책수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담당기구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연구개발 사업이 병행되어져야 하며 또한 농민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 기계 이용의 원활을 위한 “아후터서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제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심의 위원회 구성이 또한 절실

히 요구되어지며 농업기계화 축진법등 법적인 뒷바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농업의 기계화가 식량증산에 절대적인 직접요인이 되고 있으면 일본만 하더라도 동력경운기의 공급량이 1953년의 100만대를 돌파한것이 2년 후인 1955년에 200만대 돌파, 1964년에 300만대를 월선 넘고 1968년에는 승용 '트랙터'가 12만4천대에 이르고 있음을 볼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68년 현재 불과 만대의 동력경운기가 공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F.A.O의 통계에 의한것을 보더라도 단위 면적당 농업동력의 투하량의 증가는 단위 면적당의 농산물 증가를 거의 정비례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에서 기도하는 획기적인 농업증산방법도 농업기계화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는것도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계화의 단계로는 우선 250만호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인력 및 축력을 이용한 성능 높은 각종 농기계의 개량 공급이다. 예를 들어 파종기 농약살포기, 수확기, 중경제초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농민 스스로가 구입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연구를 통해 이를 지도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막대한 농업노동 절약과 농가 소득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형동력기계로 3~5마력의 '매리·틸라'를 주축으로 하는 기계화로 정부에서의 약간의 보조로서 농가에서 소를 팔아 송아지를 사듯이 우리나라 농가 경제실정에 부합된 형태로서 이 과정이 동력기계화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제 3단계로서 중형 동력기계 5~10마력의 동력경운기를 위주로 한 기계화로서 이는 대농이나 중농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이룩할 수 있는 단계의 기계화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 동력경운기의 형태이며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대중화 한 기계화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면적이 협소한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특수한 기계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제 2단계인 '매리틸라' 위주와 제 3단계인 동력경운기 기계화는 외국의 예를 보아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계화의 단계인 것이다. 그 다음 제 4단계로 보행용 동

력기계로서는 사용의 불편이 많아 이를 승용화 시켜 마력을 15~25마력으로 한 소형 '트랙터'의 형태로서 현재 일본에 10만대가 공급되고 있는 형태의 기계화 단계이다.

다음으로 25마력 이상 40마력 사이에 중형 '트랙터'의 기계화 단계로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성을 떠 놓가에 있어서는 개인 구입이란 도저히 불가능하며 협업농이나 농업진흥공사 및 목장등에서 소유 할 수 있는 기계로서 특히 구라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랙터'에 의한 기계화의 형태인 것이다. 다음 단계로 미국의 대농장에서 기계화 되고 있는 5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에 의한 기계화 단계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농업실정으로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농업이란 농작물 자체의 품종이나 기호성 및 경작시기의 차이 등으로 강제성을 떤 집단농장외에는 대규모의 농장을 공동으로 작업시키기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일본에서도 대형기계에 의한 대규모의 집단 농장을 시험적으로 시도 하였으나 여러가지 난점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가급적이면 동력기계의 활용증대와 기계의 완전관리 및 농업의 복잡성으로서 개인소유 형태가 더 용이하고 성공적인 기계화 형태라고 하겠다.

기계화의 시책면에 있어서는 농업기계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방안이 책정되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연차별 공급기종 및 대수 보조정책과 아울러 기술지도 및 '아후터·서비스'의 기구확보, 농업기계 공장 육성방안 및 계열화 정책과 우량농기구의 농촌공급을 위한 겸사제도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농민이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정책이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기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강력한 농업구조개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의 급격한 향상을 위해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축소 시키고 농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기계화는 절대 시급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